

4.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(안)입법예고

자료제공 : 건설교통부공고제 1998-120호 1998. 3. 25.

주 요 골 자

- 가. 외국법인은 세법상 비업무용토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장·사무소용지 등 특정용도의 토지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,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전면 폐지함.
- 나. 외국인은 체류상한이 5년인 비자(F-2비자) 소지자에 한해 200평 이하의 주거용지와 50평 이하의 상업용지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, 앞으로는 비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이 토지 용도와 면적에 관계없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.
- 다. 외국법인 및 외국인 개인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허가를 얻도록 하고 60일내에 허가처리를 하고 있었으나, 앞으로는 이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신고접수시 즉시 수리토록 함.
- 라. 우리 국민의 토지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·법인·정부 등에 대한 국내 토지취득을 제한하는 상호주의 규정과 군사지역·섬지역·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대한 취득제한 규정은 현행대로 존치함.

개 정 이 유

외국인의 적극적인 국내투자를 유도하여 IMF 금융지원 이후의 외환부족사태를 극복하고 침체되어 있는 국내 주택산업 및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따른 제한을 전면 철폐하며,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주택회보